

드림팀(장애인 예술단) 스폰서.

기업의 장애예술인 고용 프로그램

CORPORATE

(주) 우리행성

Homepage

[우리행성] <http://www.ourplanet.co.kr>

[사회복지법인 성민] <http://wfsm.or.kr>

드림팀 소개 .

드림팀은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장애인 예술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장애인들과 스폰서 기업의 연결을 통해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장애인들에게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운영 중인 프로그램 : 디자인 아트, 서예, 공예, 피아노, 오케스트라, 합창단, 역도, 농구 등 30여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장애인유관기관과 함께 운영 중

스폰서 기업 이점 .

01

비용 절감

- 스폰서 등록 인원은 **장애인고용으로 인정**
-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대 60% 절감**

예시

연간 1인 기준 비용 (대략)

- 장애인 고용부담금* - 2,290 만원
- 스폰서 비용 (급여+관리비) - 1,560 만원 (경증) 1,800 만원 (중증)

직원 130인 기업체 기준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 4명
- 고용 부담금 : 9,160 만원 (2290 * 4)
- 스폰서 비용 : 3,600 만원 (1800 * 2)
(중증 2명 스폰서, 경증은 2명 인정)

연간 5,560 만원 절감 (60%)

02

기업 가치

- 장애인 고용을 통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ESG Value 향상
-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재고
- 드림팀 프로그램 활동 마케팅 활용
- 콜라보 이벤트 및 프로모션 진행 (전시, 공연, 등)

03

편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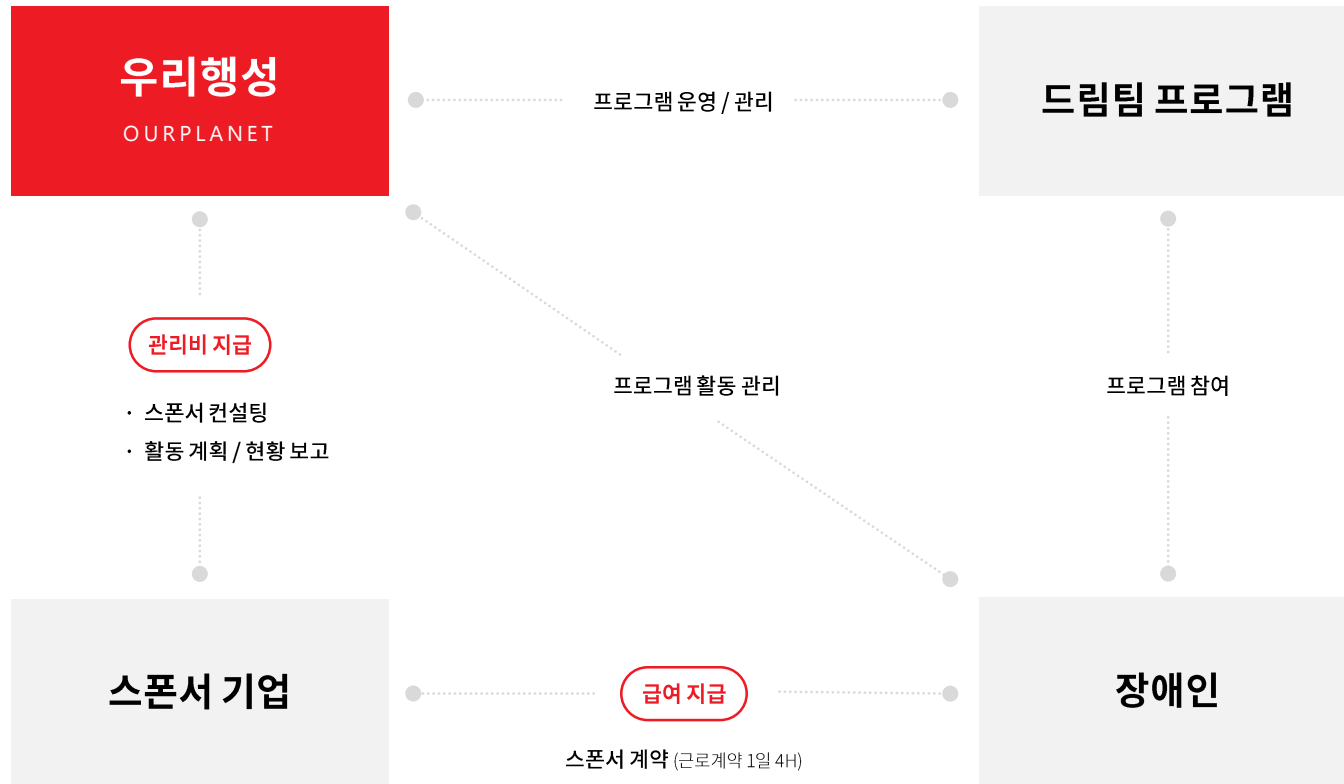
- 장애인 직접 고용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대행
- 스폰서 등록 이후 모든 활동 관리 및 보고
- 직접 고용에 관한 인사 관리
-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략수립부터 실행까지 컨설팅

EFFECT

장애인 고용부담금*

: 100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드림팀 구조 .



※ 장애인들은 장애인유관기관(장애인고용공단)과 복지법인 성민을 통해 추천 받아 운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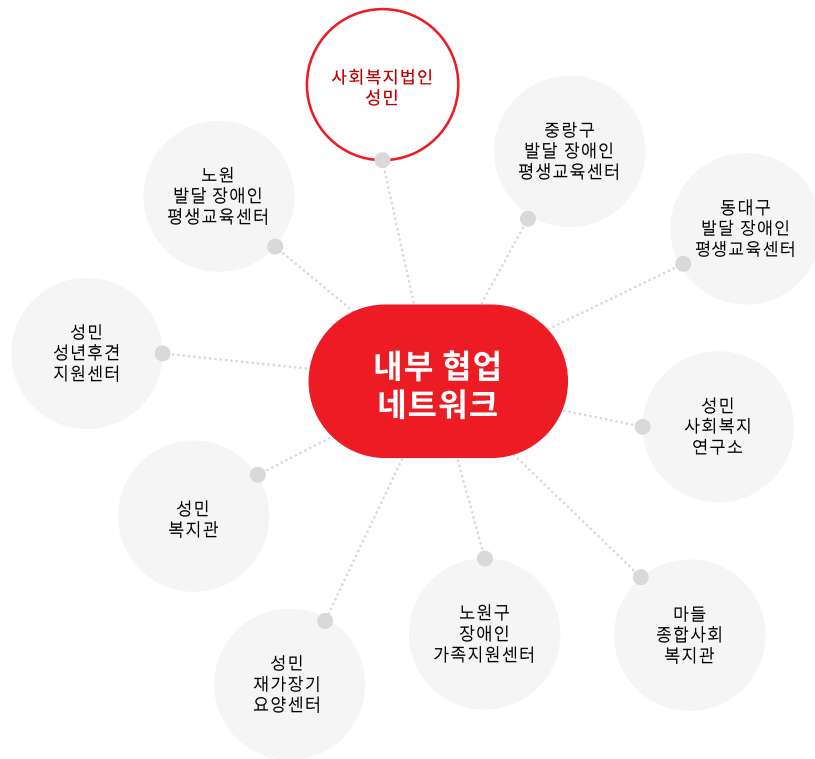
우리행성 소개 .

우리행성은, **우리들의 행복한 성장의 약자로**

2015년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장애인 관련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성민(20년 이상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발전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장애인 예술단 사업자 선정

2022년 장애인 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창출 지원 사업 심의 결과 안내

2022년 장애인 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창출 지원사업
 <장애인 예술인 맞춤형 제안 직무 발굴 및 신규개발(이하 "일자리 개발")>,
 <신규 장애인 예술단 일자리 창출 지원(이하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 개발> 사업에는 3건,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6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고, 심의를 통해 각 1건, 500백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1 심의 개요

□ 지원신청 및 선정 현황

(단위 : 건, 원)

사업유형	지원건수	선정건수	선정액
일자리 개발 지원	3	1	50,000,000
일자리 창출 지원	6	1	450,000,000

3 선정 결과

□ 선정 결과

사업유형	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일자리 개발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문화예술직무 개발	50,000,000
일자리 창출 지원	사단법인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	장애인 예술단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50,000,000

[원문바로가기](#)



「장애인 예술단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장애인 예술단을 직·간접 고용하여
전문성 있고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트-하트재단에서는 5명의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고용, 예술, 학계, 연구분야)으로
구성하여 심의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여 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드리며,
「2022년 장애인 예술단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예술단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구 플라비스 앙상블
성민복지관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우리행성의 지주법인

사업 수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된 예술단 중 2개 기관 추가 선발 예정

문의: 하트-하트재단 인식개선사업팀(02-430-2000/7930)

이웃과 함께 하트-하트재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원문바로가기](#)

드림팀(장애인 예술단) 사례

'장애인 연주자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장애인공단, 하트하트재단·삼구아이앤씨와 업무협약 체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08 16:23:4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8일 (주)삼구아이앤씨, 하트-하트재단과 장애인 연주자의 고용 증진에 앞장서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시저장
저장목록
목록삭제
도움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8일 (주)삼구아이앤씨(대표이사 동일범·김형규), 하트-하트재단(이사장 신인숙, 이하 재단)과 협약을 맺고 장애인 연주자의 고용증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 진홍섭 센터장, (주)삼구아이앤씨 구자관 책임대표사원, 재단 오지철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장애인 연주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시각장애 예술인 고용증진 '맞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14 12:2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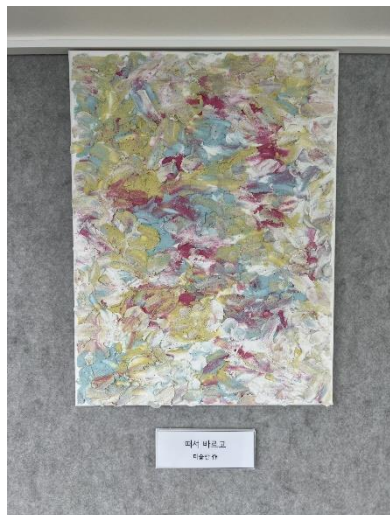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가 14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과 시각장애인 합창단 창단 및 시각장애 예술인의 고용증진에 앞장서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

임시저장
저장목록
목록삭제
도움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센터장 진홍섭, 이하 서울맞춤훈련센터)가 14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허경아, 이하 서울시각장복)과 시각장애인 합창단 창단 및 시각장애 예술인의 고용증진에 앞장서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맞춤훈련센터 진홍섭 센터장, 서울시각장복 허경아 관장, 서울위드라이더 합창단 흥복희, 함정민 지휘자를 포함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드림팀 - 디자인아트 작품 활용



FAQ

Q. 스폰서 계약이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되는 것에 문제는 없나요?

- •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 또한,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Q. 스폰서 대상인 장애인의 급여와 계약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 • • 계약형태는 기본적으로 1년 계약직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기업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 급여는 일 4시간 주 4일 근무를 기준으로 보통 최저시급으로 계산됩니다. (한달 기준 약 90만원)
- 그리고 모든 활동은 우리행성 시설에서 진행되므로 기업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계약시 출퇴근 체크/연차/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 •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정으로 적용합니다.
- 방법은 서면, 전자문서, 인트라넷 등 기존에 사용중인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Q. 장애인은 어떤 과정으로 연결되나요?

- • • 기업에서 분야(문화/예술/체육)를 선정하면, 해당 분야 프로그램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매칭해드립니다.
- 등록 후에도 기업이나 장애인의 요청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Q. 드림팀(장애인 예술단)과 함께 어떤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할 수 있나요?

- • • 분야 및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스폰서 기업의 제안을 통한 진행도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예술팀(미술, 음악)의 경우 공연이나 전시회와 같은 형태가 가능하고,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물(그림, 음악)은 마케팅 용도(판촉물, 영상)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드림팀 관련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15호, 2020. 6. 9.,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

②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